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0
----------	-----

2014. 12. 19.(금)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2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2월 9일

(제33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가. 제안이유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의 불필요 및 중복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 불필요 및 중복 조문 정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홍열)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2001년 제정된 본 조례는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활성화시켜 보건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재단의 설립운영과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 현재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으로,
- 조례 내용 중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에 관한 부분만 존속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재단설립을 완료하였으며(‘00.12.15.), 「민법」 제32조, 제33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
- 입법예고(‘14.10.20.~11.9.)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련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운영 중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바이오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를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에”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재단은”을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7조 중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8조 중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홍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인격 및 명칭)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홍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p> <p>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명칭</li> <li>3.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사업에 관한 사항</li> <li>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li> <li>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li> <li>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li> <li>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li> <li>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li> <li>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li> </ol>	<u>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홍재단 지원 조례</u> <p>제1조(목적) ----- ----- -----바이오산업 육성·진흥을 위하여 <u>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홍재단 지원에</u> ----- -----.</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u>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u> <u>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u> <u>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lt;삭제&gt;</u>
<p>제5조(사업) <u>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p> <p>제7조(운영비 등 지원) <u>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u>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u></p> <p>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u>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5조(사업) <u>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u></p> <p>제7조(운영비 등 지원)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u></p> <p>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u>운영을 위하여-----</u> ----- -----.</p> <p>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 -----<u>「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u></p>

## 관 계 법 령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락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